

제1장

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

I

제도 의의

□ 개 념

-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·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
 - 투자심사,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의 기초

□ 주요내용

- (재정목표)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·전략 등 기본방향
- (재정전망) 세입·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
- (투자계획)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

□ 필요성

-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,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
-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 강화
-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·장기 중점 자원투자 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고려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

□ 연 혁

- ('88년)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**법제화**(지방재정법)
- ('91년)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**국무회의 보고 규정**
- ('93년)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
- ('95년) 계획수립 결과를 관계 부처에 통보, 협의 추진

- ('05년)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(4월→11월)
- ('07년)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
- ('14년) 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, 지방채 발행 제한
- ('15년) 계획 수립기간 변경(다음 회계년도부터 5회계연도)

□ 근거규정 : 지방재정법 제33조

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년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,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(이하 “중기지방재정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
2.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
3.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
4. 분야별 자원배분계획
5.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
6. 의무지출(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하 같다)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(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
7.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
8. 통합재정수지[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(純)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] 전망과 관리방안
9.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
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.

1. 국가의 재정운용방향
2.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
3.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
4.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

-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,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·제2항·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
-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
-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I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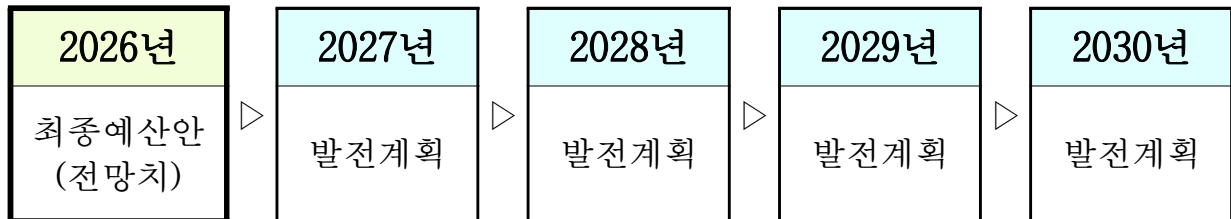
계획수립 및 운영체계

□ 수립 절차

- | | | |
|---|---------------|--|
| ① | 행정안전부 | 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작성, 자치단체 통보(~'25.8월) |
| ② | 지방자치단체 | ■ 지방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('25.8~11월) |
| ③ | 지방자치단체 | ■ 지방의회(11월) 및 행정안전부(12월) 제출 |
| ④ | 행정안전부 | ■ 지방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종합계획 수립(관계부처 협의, '26.1~3월) |
| ⑤ | 행정안전부 | ■ 국무회의 보고('26.4월) |

-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,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
-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별 계획을 기초로 하되,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부합하도록 **종합계획**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보고

□ 계획기간 : 2026 ~ 2030년 (5개년)



□ 계획대상

- 대 상 : 일반회계, 기타특별회계, 기금
- 기 준 : ('26년도)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'25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하되, ('27년도 이후) 중기지방재정계획의 '26년 규모 및 예산 증가율·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

□ 계획방향

- 「2026~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)에 따라 계획 작성
-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,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·반영
-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·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
- 「2025~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」 수립 이후 여건변화 요인을 점검하고,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수립